



제43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서·행동 치료·상담 지원 및 개별유아교육지원 등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1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유아생활지도 범위에 유아의 안전 보호 명시 등	3
2. 정서·행동 치료·상담 지원 및 보호자 협조 의무	7
3. 교육활동 방해 유아에 대한 개별유아교육지원	13
4. 「아동복지법」 위반행위 면책 대상에 정서·행동 치료·상담 지원 및 개별유아교육지원 추가	1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6.

3. 회부연월일 :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아들 중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이러한 유아들에 대한 상담, 치료, 생활지도 및 개별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서적·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건강히 성장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치원장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나 상담·학습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이 다른 유아들의 학

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개별유아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이를 위해 원장은 개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유아생활지도 범위에 유아의 안전 보호 명시 등(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유아생활지도의 범위에 유아의 안전 보호를 명시하고, 인력 및 시설 등 유아생활지도에 소요되는 경비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u>인권을</u>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 <u>안전과 인권</u> 을----- ----- ----- -----.
② (생략)	② (생략)
<u><신설></u>	③ <u>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1) 유아생활지도 범위에 유아의 안전 보호 명시(제21조의3제1항)

□ 현행법 제21조의3 및 현행 시행령 제25조의2¹⁾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데, 그 지도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에서는 원칙적 사항으로 유아의 인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돌봄활동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로 구체화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유치원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유치원 내에서 매년 9,00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유치원 교원이 사전에 유아를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의, 훈계 등 일부 지도가 유아에 대해서 침익적일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유아생활지도 범위에 유아의 안전 보호를 명시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1)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생략)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최근 5년간 유치원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기준: '25. 6.)

2020	2021	2022	2023	2024
6,202	9,180	9,015	9,861	9,802

* 자료: 학교안전공제회

□ 다만, 관련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경우에도 「유아교육법」과 동일하게 생활지도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²⁾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의 경우에만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현행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에서 유아생활지도의 기본원칙을,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³⁾에서 '보건 및 안전' 등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에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생략)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유아 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보건 및 안전

2) 유아생활지도 소요 경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제21조의 3제3항 신설)

-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생활지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 발의 당시(2026.3.6.) 유아생활지도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⁴⁾와 달리 소요 경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유치원은 초·중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생활지도 관련 인력 및 시설 부족 문제가 더 클 수 있고, 유아생활지도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다만, 최근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⁵⁾이 이루어져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5) 「유아교육법」 [시행 2026.11.20.] [법률 제21658호, 2026.5.19., 일부개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 ② (생략)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정서·행동 치료·상담 지원 및 보호자 협조 의무(제21조의4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유아에 대하여 유치원 구성원과 정신건강·심리·상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치료를 권고하거나 상담, 학습지원 등 정서·행동 지원을 하며, 유아의 보호자는 해당 권고 및 지원에 대해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4(유아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원장은 소속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치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유아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의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

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유아가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및 전문가의 기준·자격,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⁶⁾ 중 매년 1,000여명이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를 겪고 있고, 그 외에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유아들 중 일부의 경우에도 심리·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유아) 현황]

(단위: 명, 기준: '25. 8.)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1,045	1,259	1,317	1,344	1,247
정서·행동장애	6	4	3	2	6
자폐성장애	778	979	1,079	1,147	1,068
의사소통장애	261	276	235	195	173

* 자료: '21~'25 특수교육통계(교육부)

- 이와 같은 유아들의 대다수는 수업 중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물건 던지기, 욕설, 폭언, 자리 이탈, 불순응행동, 학습 참여 거부 등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정서·행동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② (생략)

- 참고로 초·중등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7)에 따라 개정안과 동일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제도 간 비교]

구분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정서·행동 지원 사항	① 상담 권고 ② 치료 권고 ③ 상담·학습지원 등 기타 지원	좌동
상담·치료 직권조치 주체	교육감	교육감, 교육장, 학교의 장
상담·치료 직권조치의 요건	① 보호자의 협조 의무 위반(정서·행동 지원 전체) ② 전문가의 의견 청취	① 보호자의 협조 의무 위반(상담, 치료 권고 한정) ② 전문가의 의견 청취 + ③ 지속된 권고 ④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의 긴급성
재정 지원 근거	X	O

□ 이에 개정안은 유아들이 정서·행동 문제를 겪을 때 상담 및 치료 등 정서·행동 지원을 적시에 제공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7)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의 기준·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유아의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대처함과 동시에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방해나 갈등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상담·치료 직권조치의 요건으로 “협조 의무 위반의 반복성” 및 “상담·치료의 긴급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협조 의무의 1회 위반만으로 상담·치료 직권조치가 가능한바, ①상담·치료를 요구가 아닌 권고로 하고 있는 규정과의 정합성 측면, ②보호자의 친권⁸⁾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직권조치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상담·치료 직권조치의 주체에 유치원 원장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상담·치료 직권조치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관할 유치원의 모든 직권조치 사항이 교육감에게 집중되어 상담·치료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상담·치료 직권조치의 요건에서 협조의무 위반 대상을 상담·치료 권고 미이행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상담·치료 권고가 아닌 상담·학습지원 등 기타 지원에 대해 협조하지 않더라도 상담·치료를 직권 조치할 수 있는바, 기타 지원 협조 위

8)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만 시에도 상담·치료 직권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정서·행동 지원 절차의 일부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정서·행동 지원 및 상담·치료 직권조치를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해당 주체가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①보호자가 상담 결과를 원장에게 통지하는 절차, ②원장이 보호자의 협조 의무 위반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정서·행동 관련 지원이 필요한 유아에게 전문적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모든 유아의 건강한 학습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정서·행동 관련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상담 권고 또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나, 개정안에 따른 정서·행동 관련 지원 중 ‘치료 권고’의 경우에는 진단 등 의학적 판단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①관련 전문가가 아닌 원장·교육감의 치료 권고에 대한 보호자 반감, ②치료 권고 필요성에 대한 권고 주체의 판단 부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3. 교육활동 방해 유아에 대한 개별유아교육지원(제21조의5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방해 유아에 대한 일시적인 분리조치인 ‘개별유아교육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까지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5(개별유아교육지원 등)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행위가 원장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를 다른 유아들과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유아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유아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유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사용하되, 개별유아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

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원장은 유아가 개별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개별교육지원을 하였음에도 원장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유아를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자는 귀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원장은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개별유아교육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매년 개별유아교육지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업 중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물건 던지기, 욕설, 폭언, 불순응행동 등 일부 유아들의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활동 방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다수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유아에 대한 분리조치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불이익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참고로 현행 시행령⁹⁾에서 유아생활지도의 방법으로 ‘훈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하위명령을 근거로 유아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분리조치를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¹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 한편, 분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등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분리조치를 위한 전담인력 등 인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이에 개정안은 교육활동 방해 유아에 대한 일시적인 분리조치인 ‘개별유아교육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9)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 4. (생략)

②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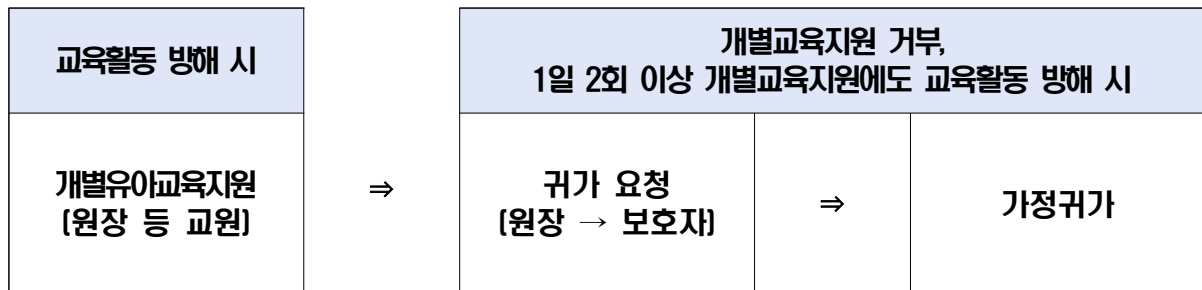
10)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초·중등학교에서도 「초·중등교육법」 11)에 따라 개정안과 동일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개별유아교육지원 절차]



1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되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 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 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 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제도 간 비교]

구분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별교육지원 요건	① 교육활동 방해	① 교육활동 방해 + ②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
개별교육지원 한계	수업 상황, 해당 유아의 특수성 등 종합 고려 필요 최소 한도 사용	좌동
개별교육지원 사실 보호자 통지 절차	X	O
귀가요청(인계 요청) 요건	① 개별교육지원 거부	좌동
	② 1일 2회 이상 개별유아교육지원 실시에도 지속적 교육활동 방해	②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 실시에도 지속적 교육활동 방해
귀가요청(인계 요청) 후속조치	X	O (가정학습 및 학교의 장 점검)
개별교육지원 공간·인력 확보 및 관련 계획 마련 의무	O	좌동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O	좌동
개별교육지원 운영실태 연례 조사	O	좌동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귀가 조치 이후 가정교육 및 그 감독 등 후속 관리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개별교육지원 거부 등에 따른 귀가조치 이후 후속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유아를 사실상 유아교육에서 배제하여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¹²⁾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별유아교육지원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개별유아교육지원 사실에 관한 보호자 통지 규정이 미비한바, 이는 보호자의 교육정보에 대한 알 권리¹³⁾를 제한하고, 나아가 개별유아교육지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보호자의 판단 기회까지 차단할 우려가 있음.

셋째, 개별유아교육지원의 요건에 대해 법익균형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개별유아교육지원의 요건은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교육활동 방해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바,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교권 및 다른 유아의 학습권이 우선되는지 법익균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①정량적 기준(개별교육지원 1일 2회 이상)만으로 귀가 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해당 조치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②보호자가 원장의 귀가 요청을 반드시 따르도록 함에 따라 교원과 보호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2)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 ⑥ (생략)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자녀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바 학부모는 교육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2010헌마293, 2011. 12. 29.).

4. 「아동복지법」 위반행위 면책 대상에 정서·행동 치료·상담 지원 및 개별유아교육지원 추가(제21조의3제2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제5호·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신체·정서 학대 및 유기·방임의 면책 대상으로 신설되는 정서·행동 치료·상담 지원 및 개별유아교육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생략)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생략)
② <u>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u>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u>원장 등 교원의 다음 각 호에</u> ----- <u>행위에</u> ----- ----- ----- -----.
<신설>	1. <u>제1항에 따른 정당한 유아생활지도</u>
<신설>	2. <u>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치료권고 및 상담·학습지원 등</u>
<신설>	3. <u>제21조의5에 따른 개별유아교육지원</u>
<신설>	③ (생략)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1조의3제2항¹⁴⁾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그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신설되는 정서·행동 치료·상담 지원 및 개별유아교육지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면책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교원들의 법적 부담을 경감하여 해당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면책 대상을 정당한 행위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지원들은 유아생활지도와 달리 그 정당성과 관계 없이 모두 면책되고 있는바, 해당 지원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정당하지 않은 행위까지 면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동일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 「초·중등교육법」¹⁵⁾에서는 모

14)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생략)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 11. (생략)

15) 「초·중등교육법」

두 정당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음.

둘째, 면책 대상에 정서·행동 치료·상담 지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 권고 등에 대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상 위반행위의 면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대상 간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정서·행동 치료·상담 지원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해당 지원을 면책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7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